##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34

발의연월일: 2025. 05. 30.

발 의 자:최수진・구자근・김예지

김소희 • 고동진 • 신성범

임이자 • 윤한홍 • 박준태

김재섭 · 조지연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(이하 "신고센터"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공인중개사의 이중등록, 무등록 중개, 거짓언행,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허위·거짓 신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로 단순 민원이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 또한, 전세사기 피해확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 록 신고센터의 업무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

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에 이 법에 따른 고용인 미신고, 표시·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행위 및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).

법률 제 호

###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2항제3호 중 "제15조제3항"을 "제15조제1항·제3항"으로, "제19조"를 "제18조의2제1항(인터넷을 이용한 표시·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한다), 제19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제3조의2 또는 제4조"를 "제3조의2, 제4조, 제6조의2,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의2(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	제47조의2(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
위 신고센터의 설치・운영) ①	위 신고센터의 설치・운영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	②
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	
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이	
조에서 "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	
위"라 한다)를 발견하는 경우	
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	
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	3
1항, 제13조제1항·제2항, 제	
14조제1항, <u>제15조제3항</u> , 제	<u>제15</u> 조제1항 · 제3항
17조, 제18조, <u>제19조</u> , 제25	제18조의
조제1항, 제25조의3 또는 제2	2제1항(인터넷을 이용한 표시
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	•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한다),
	제19조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	5
한 법률」 제3조, <u>제3조의2</u>	제3조의2,

<u>또는 제4조</u> 를 위반하는 행위	제4조, 제6조의2, 제6조의3 또		
	<u>는 제6조의4</u>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